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할당관세 부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익금 부과·징수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93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할당관세 부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익금 부과 · 징수	3
가. 농산물 할당관세 제도 현황	4
나. 수입이익금 제도 현황	8
다.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14
라. 검토의견	15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 추가	17
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현황	18
나. 관계기관 의견	20
다. 검토의견	21
3. 부칙	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4. 10.
3.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 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5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할당관세 부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익금 부과·징수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접근물량 (TRQ)을 수입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을, 할당관세 부과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게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1. <u>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u> 2.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u>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u>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 할당관세 제도 현황

할당관세 제도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제도로, 기본세율에서 40%p 범위 내의 세율을 더하거나 빼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¹⁾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음.

현재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로만 운영되는데, 2025년 기준 할당관세 운영 품목으로는 총 47개 품목이 있음.

【 2025년 할당관세 운영계획 】

(단위: %, 톤)

연번	품목	세율			한계수량	운영기간
		기본(A)	할당(B)	B-A		
1	양배추	27	0	△27	7,500	1.24~4.30
2	배추	27	0	△27	10,000	1.24~4.30
3	당근	30 (또는 134원)	0	△30	15,000	1.1~2.28
					20,000	3.1~4.30
4	무	30	0	△30	8,000	1.1~2.28
					12,000	3.1~4.30

1)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번	품목		세울			한계수량		운영기간
			기본(A)	할당(B)	B-A			
5	오렌지		50	20	△30	10,000		1.24~2.28
6	바나나		30	0	△30	200,000		1.24~6.30
7	파인애플		30	0	△30	46,000		1.24~6.30
8	아보카도		30	0	△30	2,000		1.24~6.30
9	망고		30	0	△30	25,000		1.24~6.30
10	망고스틴		30	0	△30	1,400		1.24~6.30
11	만다린		50	20	△30	2,800		1.24~6.30
12	자몽		30	0	△30	6,000		1.24~6.30
13	두리안		45	15	△30	1,700		1.24~6.30
14	돼지고기 (삼겹살 제외/냉동)		25	0	△25	10,000		5.1~12.31
15	계란 가공품	노른자위	27	0	△27	1,050	4,000	5.1~12.31
		기타	27		△27	2,700		
		흰자위	8		△8	250		
16	매니옥칩		20	10	△10	60,000		1.1~12.31
17	커피생두		2	0	△2	수입전량		1.1~12.31
18	옥수수(가공용)		3	0	△3	1,900,000		1.1~12.31
19	감자·변성전분		8	0	△8	190,000		1.1~12.31
20	설탕		30	5	△25	100,000		1.1~12.31
21	코코아생두		2	0	△2	5,500		1.1~12.31
22	코코아 가공품	코코아매스	5	0	△5	4,000		4.1~12.31
		코코아버터						
		코코아 파우더						
23	으깬 파인애플		45	15	△30	7,000		4.1~6.30
24	으깬 감귤류		45	15	△30	2,000		1.24~6.30
25	과일컵테일		50	20	△30	5,000		4.1~6.30
			45	15	△30			

연번	품목		세율			한계수량	운영기간
			기본(A)	할당(B)	B-A		
26	오렌지농축액		50	10	△40	6,000	1.1~12.31
27	파인애플주스		50	10	△40	1,600	1.1~12.31
28	기타단일과실주스		50	20	△30	6,000	4.1~6.30
29	토마토페이스트		5	0	△5	수입전량	1.1~12.31
30	커피농축액		8	0	△8	2,500	1.1~12.31
31	인스턴트커피		8	0	△8	2,500	1.1~12.31
32	조주정		10	0	△10	160,000kL	1.1~12.31
33	유장분말		20/40	0	△20/△40	20,000	1.1~12.31
34	매니옥펠릿		7	0	△7	100,000	1.1~12.31
35	겉보리		5	0	△5	80,000	1.1~12.31
36	옥수수(사료용)		3	0	△3	11,000,000	1.1~12.31
37	대두(채유·대두박용)		3	0	△3	1,200,000	1.1~12.31
38	사료용근채류		20	0	△20	900,000	1.1~12.31
			5		△5		
39	밀기울		2	0	△2	40,000	1.1~12.31
40	비트 펄프	사료용	5	0	△5	수입전량	1.1~12.31
		버섯재배	5	0	△5	25,000	
41	주정박		2	0	△2	35,000	1.1~12.31
42	대두박		1.8	0	△1.8	2,000,000	1.1~12.31
43	팜박		2	0	△2	25,000	1.1~12.31
44	사료용조제품		5	0	△5	12,000	1.1~12.31
45	농약원제		2	0	△2	수입전량	1.1~12.31
46	요소	비료용	2	0	△2	수입전량	1.1~12.31
		기타	8		△8		
47	인산이암모늄		8	0	△8	수입전량	1.1~12.31

자료: 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농업통상과, 2025. 5. 26.

②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025. 5. 26.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공고)」를 통하여 품목별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각종 협회 등을 추천기관으로 지정함.

각 품목별 추천 기관은 선착순 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에게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배정·배분하는 ‘실수요자배정’ 방식으로 할당관세를 배정함.

【 농산물 수입방식 개요 】

□ 국영무역 방식

- 추천대행기관(aT)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판매하는 방식
-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

□ 수입권공매 방식

- 관세할당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에 대한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 민간에게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상당한 차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

□ 실수요자배정 방식

- 수입권 관리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5. 23. (일부 재가공)

나. 수입이익금 제도 현황

수입이익금 제도는 수입업자²⁾에게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현재는 협정 등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TRQ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됨.

경제이론적으로, 재화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는 ① 가격측면에서는 관세제도를, ② 수량측면에서는 쿼터(수량할당) 제도를 각각 무역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음.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간 가격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의 경우, ① 관세제도는 수입업자의 관세 납부에 따라 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지만, ② 쿼터제도는 별도의 납부제도(입찰금액, 수입이익금 등)가 없다면 정부에 귀속시키지 못하고 수입업자가 획득하게 됨.

TRQ는 저율관세 하의 쿼터제도이므로 두 제도의 복합 형태인데, 낮은 관세율로 인하여 관세만으로는 가격차익을 정부에게 충분히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별도로 수입이익금 제도를 운영하여 수입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TRQ는 크게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라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TRQ(WTO TRQ)와 ② 각각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정해진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TRQ(FTA TRQ)로 구분할 수 있음.

2) 참고로 전체 수입업자 수는 관세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익금 제도는 두 TRQ 모두에서 운영되는데,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함.

WTO TRQ에 대하여는 ① 「양곡관리법」³⁾, ② 「인삼산업법」⁴⁾, ③ 「축산법」⁵⁾ 및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⁶⁾에서 각각 양곡, 인삼류, 축산물, 그 외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익금 제도를 규정함.

한편, FTA TRQ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이라 한다)에서 FTA TRQ가 적용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이익금 제도를 규정함.⁷⁾

3)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 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인삼산업법」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① 삭제 <1999. 1. 21.>

②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 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축산법」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 주: 「축산법」은 축산발전기금을 “기금”으로 약칭함)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

【 농산물 수입이익금 제도 개요 】

연번	구분	WTO TRQ				FTA TRQ	
		양곡	인삼류	축산물	그 외 농산물		
1	근거 규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축산법	농안법	FTA농어업법	
		제13조의2	제20조	제45조	제16조	제22조	
2	대상 농산물	TRQ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각 FTA에 대하여 농식품부장관이 고시
		2-① 소비자 시판용 미곡	인삼류	천연꿀	2-① 고추·마 늘·양파·생강 ·참깨		
		2-② 가공용 미곡·보리					
		2-③ 대두·팥 ·녹두·땅콩					
		2-④ 메밀· 감자					
		2-⑤ 각종 분쇄 물 기류 등					
		2-⑤ 각종 응집 물 등					
3	납입 회계 /기금	2-①에 해당하는 양곡: 공익직불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	농안기금	FTA기금	
		2-②에 해당하는 양곡: 양특회계					
		그 외 양곡: 농안기금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25.

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주: 「FTA농어업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기금”으로 약칭함)

개정안은 「농안법」에 대한 것이므로, 「농안법」상의 수입이익금 제도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되는 수입이익금 제도와 관련됨.

농안기금의 품목별 수입이익금 징수실적은 2024년 기준 8개 품목에 대하여 566억 4,300만원이며, 최근 4년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최근 4년간 농안기금 품목별 수입이익금 징수실적 】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참깨	35,639	32,655	12,219	12,973
2	참기름	2,017	2,132	1,465	1,356
3	마늘	-	18,901	1,702	-
4	깐마늘	-	1,103	-	-
5	생강	-	-	1,664	-
6	콩	2,137	3,038	1,992	10,057
7	콩나물콩	7,377	13,597	19,445	21,700
8	팥	57	249	1,109	798
9	녹두	9,734	15,205	10,189	9,103
10	메밀	1,061	1,119	328	600
11	귀노아	-	-	-	56
합계		58,022	87,999	50,113	56,643

주: 음영은 「농안법」 상 수입이익금 징수 품목임 (6번~11번은 「양곡관리법」 상 징수 품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5. 15.

해당 수입이익금은 농안기금의 수입사업인 “법정부담금(59-593)” 사업에 반영되는데, 2025년에는 2024년 계획액과 동일한 575억 1,900만원의 수입이익금(법정부담금)이 계획됨.

【 최근 5년간 농안기금 법정부담금 수입사업 기금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1년	52,091	52,091	52,091	58,022	58,022	111.4	-	-
2022년	58,465	58,465	58,465	87,999	87,999	150.5	-	-
2023년	58,465	58,465	58,465	50,113	50,113	85.7	-	-
2024년	57,519	57,519	57,519	56,643	56,643	98.5	-	-
2025년	57,519	-	-	-	-	-	-	-

자료: ①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5. p. 2714.

②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2권, 2025, p. 40.

참고로 농안기금의 2025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2조 5,977억 9,600만원으로, 수입이익금이 반영되는 “법정부담금” 수입사업은 총액의 2.2%에 해당함.

또한 법정부담금이 속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2025년에 1,284억 4,300만원이 계획되었는데, 법정부담금 수입사업은 이 중 44.8%의 비중을 차지함.

【 2025년 농안기금 수입계획 총괄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	B-A	%
총 계	2,394,770	2,406,270	2,597,796	100.0	203,026	8.5
관유물대여료	45	45	45	0.0	0	0.0
기타이전수입 및 재산수입	11,204	11,204	13,035	0.5	1,831	16.3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32	32	32	0.0	0	0.0
변상금 및 위약금	2,575	2,575	2,575	0.1	0	0.0
기타경상이전수입	123,118	123,118	128,443	4.9	5,325	4.3
법정부담금	57,519	57,519	57,519	2.2	0	0.0
기타경상이전수입	65,599	65,599	70,924	2.7	5,325	8.1
잡수익	-	-	-	-	-	-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773,459	773,459	741,002	28.5	△32,457	△4.2
용자원금회수	1,363,969	1,363,969	1,475,631	56.8	111,662	8.2
정부예금회수	120,368	120,368	237,033	9.1	116,665	96.9
전입금	-	11,500	-	-	-	-
예수금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5. p. 2714.(일부 재가공)

다.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 품목에 수입이익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세부과를 통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상 명시된 품목 및 시장접근물량(TRQ) 외에 수입이익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것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임.

2) 수입업체 등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수입업체의 경우, 품목이 다양하고 영세한 업체가 많아 전체 수입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등 기관이 구성되기 어려워,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움.

라.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TRQ 물량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게만 부과·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을 할당관세 부과 대상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게도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할당관세를 통하여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가 누리는 가격차익을 정부가 충분히 국고로 귀속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수입이익금 제도를 적용하여 보완할 수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른 할당관세 수입이익금은 농안기금의 추가적인 수입으로 반영되므로, 농안기금의 재정여력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입이익금 제도는 민간부문인 수입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에게 이전시켜 사익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개정안이 할당관세까지 부과를 확대하는 공익상의 사유 등이 정책대상인 수입업자 등에게 미칠 과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도 적용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가 마주하는 공급곡선 상의 가격이 ‘국제가격+할당관세’가 아닌, ‘국제가격+할당관세+수입이익금’이 되어, 국내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농안법」에 따른 수입이익금 제도는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농산물(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참기름·오렌지·감귤류)에만 적용됨.

그 외 양곡·인삼류·축산물에 적용되는 수입이익금 제도는 현재 각각 「양곡관리법」·「인삼산업법」·「축산법」의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는데, 이들은 모두 현행 「농안법」과 같이 TRQ에 대하여만 수입이익금 부과·징수를 규정함.

【 개정안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제도 대상 비교 】

연번	근거법률	현행법 상 대상	➡	개정안에 따른 대상
1	농안법	WTO TRQ 채소·과일류	➡	WTO TRQ 채소·과일류, <u>할당관세 적용 채소·과일류</u>
2	양곡관리법	WTO TRQ 양곡	=	WTO TRQ 양곡
3	인삼산업법	WTO TRQ 인삼류	=	WTO TRQ 인삼류
4	축산법	WTO TRQ 축산물	=	WTO TRQ 축산물
5	FTA농어업법	FTA TRQ	=	FTA TRQ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9.

따라서, 양곡·인삼류·축산물에 대한 수입이익금 제도를 규정하는 각각의 법률과 맞물리지 않을 수 있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 추가

개정안은 농안기금의 지출 용도에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관한 지원사업과 수입이익금 부과·징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u>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품목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이 경우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 6. 제16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u>진흥, 생산자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u>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현행	개정안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을 용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용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용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현황

농안기금은 「농안법」 제5장(제54조~제61조)에 설치근거를 두는 기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aT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용함.

2024년 기준, 농안기금의 수입은 계획현액이 2조 4,196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197억원 감소한 2조 1,999억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은 2조 1,999억원을 지출하고, 64억원을 이월하며, 216억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 농안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표 】

1. 수입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계획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D)	미수납액 (B-C-D)	계획대비 수납증감 (C-A)
	당초	변경(A)					
수입	2,394,770	2,419,570	2,203,261	2,199,892	-	3,370	△219,678

2. 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		전년이월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지출	2,394,770	2,419,570	5,285	2,424,855	2,199,892	6,367	21,5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4.

지출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일반지출로는 총 7개 단위사업에서 2조 1,512억원을 지출하였고, ② 정부내부지출로는 15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여유자금운용으로는 2,297억원을 지출하였음.

【 2024년 농안기금 지출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		전년이월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총계	2,394,770	2,419,570	5,285	2,424,855	2,199,892	6,367	21,580
일반지출	2,141,807	2,173,898	5,285	2,179,183	2,151,237	6,367	21,580
농산물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	797,837	849,895	-	849,895	834,279	252	15,364
농산물 유통개선	544,855	526,888	-	526,888	525,685	-	1,203
소비자유통 활성화	69,501	69,501	-	69,501	69,501	-	-
종자 수급조절	68,744	68,744	-	68,744	68,166	-	578
농식품 수출촉진	458,246	456,246	-	456,246	456,246	-	-
식품산업 육성	144,633	144,633	5,285	149,918	139,810	5,719	4,389
기금운영비	57,991	57,991	-	57,991	57,550	396	46
정부내부지출	15,930	15,930	-	15,930	15,930	-	-
여유자금운용	237,033	229,742	-	229,742	32,725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4.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제5호의 경우, 수입이익금을 징수품목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출하는 경우, 수입이익금 징수규모가 큰 일부 품목에 지원이 편중되어 수급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함.

제6호의 경우 현행법을 통하여도 지원이 가능하여 개정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제7호의 경우 품목별 수급상황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각 수용이 곤란함.

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⁸⁾⁹⁾

수입이익금의 용도를 한정하는 경우 징수규모가 큰 일부 품목에 대한 지원 편중이 우려될 수 있고,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품목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8) aT는 현행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임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안기금의 지출 용도에 ① 수입이익금 부과 품목의 생산자 등 지원, ② 수입이익금 부과·징수에 따른 지출 및 ③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첫째, TRQ 및 할당관세 제도는 일정 물량의 수입농산물이 저율관세를 통하여 국내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정책으로서, 대상 품목의 생산자 등 국내 공급주체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안기금으로 수입이익금 부과 품목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이익금 수입 중 50% 이상을 해당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입정책에 따라 생산자 등이 받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은 앞서 할당관세에 대한 수입이익금 부과를 통하여 농안기금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데, 이는 지출 용도의 추가에 따라 농안기금의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수입의 증가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제16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부과·징수’를 농안기금 지출 용도로 추가하는데, 현재 수입이익금 제도의 수입은 농안기금의 수입 중 “법정부담금(59-593)” 사업에 반영됨.

이에 따라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역시 농안기금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명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농안기금의 지출 용도에 추가하는데, 생산자단체는 현행법상 계약생산·유통명령·비축 등 다양한 수급조절 규정의 대상이 되고, 유통과정에서도 농산물 출하·집하장 설치 등 주요 역할을 하는 공급주체에 해당함.

농안기금의 목적이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가격안정 도모 및 유통구조 개선 촉진’인 점을 고려하면, 지출 용도에 추가할 수 있어 보임.¹⁰⁾

다만, 안 제57조제2항제5호 후단은 농안기금의 수입 중 일정액을 특정 사업에만 지출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기금 운용의 신축성 측면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농안기금의 수입이익금 수익은 2024년 기준 575억 1,900만원이 계획되고 566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농안기금의 전체 수입 대비 각각 2.38%(계획), 2.53%(수납)에 해당함.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개정안의 자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57조제2항제5호를 수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먼저, 안 제57조제2항제5호 전단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품목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것이 ‘품목’이지만, 품목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해석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57조제2항제5호 후단에서 ‘수입이익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일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해석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보임.

따라서, 전단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부과·징수 대상 품목의 품목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여, 수입이익금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57조제2항제6호 중 ‘제16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에서, 「농안법」상 수익이익금 제도와 농안기금 모두가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로 ‘농산물’을 표시할 필요는 없어 보임.

또한, 현행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제1항에 따른(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으로 표현하는 점¹¹⁾을 고려할 때, ‘제16조에 따른’이 아닌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 부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이 곤란하므로,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에 관하여도 수용이 곤란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수입 이익금 제도의 대상에 할당관세 부과 농산물을 새로이 포함하도록 하고, ②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에 생산자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그 준비기간을 두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